行政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762

발의연월일: 2024. 11. 21.

발 의 자: 송석준·김선교·이종배

성일종・조배숙・조경태

김형동 · 이헌승 · 박형수

김성원 • 박정하 • 유상범

곽규택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 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43조에 대하여 국가가 당사자소송의 피고인 경우 가집행의 선고를 제한하는 것은 국가가 아 닌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인 경우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평등원칙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 로 위헌 결정을 선고하였음(헌법재판소 2022. 2. 24. 2020헌가12 결정).

이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규정을 삭제하여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서도 가집행선고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발생한 국회의 입법의무를 충실 히 이행하려는 것임(안 제43조 삭제).

법률 제 호

行政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43條(假執行宣告의 제한) 國家	<삭 제>
를 상대로 하는 當事者訴訟의	
경우에는 假執行宣告를 할 수	
없다.	